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2. 11 선고 2024가단91060 판결 [보증채무금]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1. 20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1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5,414,321원과 그 중 24,715,124원에 대하여 2024. 11. 9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2023. 5. 24.자 리스계약이 렌트로 연체로

2024. 8. 23. 해지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보증금 (원금

24,715,124원 및 지연배상금) 청구

2.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김한철